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49
----------	--------

제출년월일: 2023. 11.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개정(안 제24조)

-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제11항)
-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제13항)
- 생일휴가 신설(제16항)

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다.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변경(안 별표 4)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3. 10. 26. ~ 11. 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5)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3. 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그 성과와 공로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2호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20일**”을 각각 “**25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의2 제3호 중 “**총무과장**”을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3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별표 4 제2호나목 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p> <p>⑥ ~ ⑩ 삭제</p> <p>⑪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p> <p>⑫ (생략)</p> <p>⑬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1. (생략)</p> <p>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p> <p>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p> <p>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p> <p>⑭ · ⑮ (생략)</p> <p><신설></p>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⑪ ----- ----- ----- -----있으며, 그 성과와 공로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⑫ (현행과 같음)</p> <p>⑬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15일</p> <p>3. ----- 25일</p> <p>4. ----- 25일</p> <p>⑭ · ⑮ (현행과 같음)</p> <p>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 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이경미 (☎8215)